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14.] [총리령 제1896호, 2023. 8. 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정하여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정밀검사의 대상이 아닌 수입식품등 등으로 정하고, 수입식품등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인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며, 수입신고가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 확인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189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8월 29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은 수입식품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수입식품등
2.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4. 별표 9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의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신고의 자동화된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을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를 "수입신고인"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제30조제1항"을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 중 "있으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를 "있으며,"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작업장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생책임자 Person in charge of sanitation	이름 Name
	연락처 Phone Number including area code
	전자우편 E-mail
직업장 현황	업종 Type of business
	<input type="checkbox"/> 도축장 Slaughterhouse
	<input type="checkbox"/> 식육포장처리장 Meat cutting and packaging plant
	<input type="checkbox"/> 식용란포장처리장 Shell egg packaging plant
	<input type="checkbox"/> 식육가공장 Meat processing plant
	<input type="checkbox"/> 유가공장 Milk processing plant
	<input type="checkbox"/> 알가공장 Egg processing plant
<input type="checkbox"/> 식육보관장 Meat storage house	
Status of Establishment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Whether a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applies to the item information below, <i>if applicable</i>
	<input type="checkbox"/> 적용 안함 No
	<input type="checkbox"/> 적용 Yes
	※ 적용하면 그 시스템을 선택 If "Yes", check as applicable or specify the system <input type="checkbox"/> HACCP <input type="checkbox"/> ISO 22000 <input type="checkbox"/> GMP <input type="checkbox"/> GFSI <input type="checkbox"/> 기타 Other ()
	※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 Whether to be certified by a certification body <input type="checkbox"/> 없음 No <input type="checkbox"/> 있음 Yes
※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다면 그 정보를 제공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 인증명 Title of certification () ■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 ■ 인증일 Certification date () ■ 만료일 Expiration date ()	
가축 종류 또는 주원료 Species of livestock or main ingredients	

별지 제28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